

거창군의회(임시회)

제 93 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(부록)

거창군의회사무과

목 차

1.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 면

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

의안 번호	2002 - 36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2. 10. .
제 출 자 : 도시환경과장

□ 제정이유

-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2년 1월 14일 제정·시행됨에 따라 낙동강 수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-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 개선 특별회계의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(안 제1조)
-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함.(안 제3조)
-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·도의 보조금, 양여금 및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함 (안 제4조)
- 특별회계의 세출은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,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저감하기 위한 시설 토지 등의 매수, 조사·연구지원, 오염총량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, 산업단지 등 폐수 재이용의 지원, 주민지원사업,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지원, 환경기초시설의 설치·운영지원 (안 제5조)
- 금고설치 : 거창군관내 금융기관에 설치 (안 제6조)
-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자금출납명령관은 도시환경과장, 자금출납공무원은 환경관리담당주사로 함 (안 제7조)
-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 (안 제10조)
-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 작성제출 (안 제12조)

□ 제정근거

-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9조 및 제30조

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조(회계년도)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.

제4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
2.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3. 타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
4. 차입금
5.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
제5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경작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
2.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저감하기 위한 시설
3.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
4. 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·연구지원
5.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
6.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 지원
7.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 사업
8.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
9.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·운영 지원

10.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
11.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
12.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
13. 그 밖에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

제6조(금고의 설치)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관내 금융기관에 설치한다.

제7조(회계공무원 관직지정)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도시환경과장, 자금출납공무원은 환경관리담당주사로 한다.

제8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)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9조(자금의 전용금지)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.

제10조(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) 세출예산상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.

제11조(예비비)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.

제12조(결산 및 보고등)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자금운용계획서를 수립 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자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운용계획서와 자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준용규정)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.

4 (제93회-산업건설위원회 부록)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